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

최 미 경 의원 외 1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회기일수 제한 조항이 폐지되고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 우리구 의회 실정에 맞는 연간회의 일수 및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에서 매년 의회운영기본계획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 2조제1항)

나. 의회운영기본계획을 매년 1월, 2월 중에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다.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되, 매 회기는 30일 이내에서 개회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라. 정례회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하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마. 정례회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4조)

바. 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개회하고,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하도록 함(안 제 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회의총일수 제한 조항이 조정되고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 우리구 의회 실정에 맞는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의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기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법령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 9. 8

보고자: 김 완 섭